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3. 17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ㅇ 제출일자 : 2000년 2월 29일
- ㅇ 회부일자 : 2000년 2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ㅇ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3. 15)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

가. 제안이유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실에 불 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ㅇ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변경 : 15인 이내 ⇨ 11인 이내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4항)
- ㅇ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위촉방법 변경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6항)
  - 당연직 위원(5인)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 외 부 인 사 (6인) : 도지사가 위원장 및 위원 위촉
- ㅇ 위원의 임기변경 : 1년 ⇨ 3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7항)

ㅇ 회의 개의요건 변경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3 제1항)

ㅇ 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이 대행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부위원장 제도 폐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4 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

ㅇ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11인 이내로 줄이고
- 당연직 위원 5명은 분쟁소지가 많은 실·국장으로 임명하고
- 위원장 및 위원 6명은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 하려는 것임.
-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 부위원장의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토록 하며
- 회의 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ㅇ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 기존 15명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리하는 방법의 설명과
- 결원 위원 위촉시 임기 등 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인중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생 략" (수정안 별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붙 임(별첨)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사 제출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개정, 수정안 대비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을 "제14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11"로 하고, "지방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중 "지방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조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 략)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①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지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6인	1. (삭 제)
2.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2. (삭 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현행과 같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 제)
제5조(회의)① (생 략)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 ---------- ---------- ----------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지방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 ---------- ---------- ---------- ----------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①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6 (생 략) ②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위원회의 ---------- ---------- ---------- 한다. 1~6(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 ---------- ----------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 위원회의 ---------- 정한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0. 3. 15
제 출 자 : 신대식 의원

1. 수정이유

○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년중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년중 보궐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 2 제7항에 부합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여 임기를 명확하게 함.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4항(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40조2(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등)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당해 지방 자치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0조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4(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등) 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의11(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구성 및 운영) ①제47조의4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이하"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